

# 산안법 개정에 따른 사규 개정사항 안내

□ 대상 사규 :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

□ 개정 사유

- 도급사업장 안전관리기준 강화 등 산안법 개정사항 등 반영
-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내 규정 강화, 조문 명확화 및 구체화, 조직 변경사항 반영 등 현행화

□ 주요 내용

- 기존 44개 조문 → 개정 후 60개 조문(조문 16개 증가 : 신설 18개, 삭제 2개)
  - ※ 그 외 기존 조문내용 보완(29개) 및 산안법시행규칙의 순서에 맞춘 단순 조문이동(12개)
- 개정 주요내용

개정내용	사유
-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준 보완 <sup>(5조~7조)</sup> - 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도 추가 <sup>(8조)</sup> - 교육계획의 수립 및 대상, 교육내용 등 구체적 명시 <sup>(17조~21조)</sup> -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및 방법 명시 <sup>(39조)</sup>	고용노동부 개선 시정명령 반영 [신설7, 보완3]
- 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기준 구체적 명시 <sup>(25조)</sup> - 유해물질 취급·관리 부서 지정 및 조치사항 추가 <sup>(32조)</sup> - 재해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시행사항 추가 <sup>(38조)</sup>	법적 준수사항 반영 [신설6]
- 회사와 직원의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구체적 명시 <sup>(4조)</sup> - 안전보건상의 업무수행자 구분 및 직무 정의 <sup>(11조~14조)</sup> - 재해 발생시 조사 및 고용노동관서 보고 기준 명확화 <sup>(37조)</sup>	조문 명확화 및 구체화 등 [신설5, 보완26]